

2007. 10. 17(수) 10:00



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9
3.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5.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25
6. 거창박물관설치 및 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7.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 41
8.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46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6호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안 제3조).

- 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본인 및 본인과 친족의 관계,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마.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9조).

-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연차보고서를 제출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제6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2007. 6. 2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한 조항이며,

- 조례안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규정도 2006.12.28.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서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1) 조례안 제2조(구성)제1항제1호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이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3항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조례안의 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로 규정하지 않고 법령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교육자를 제외하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현황(2007. 10월 현재)

- 윤리위원 5명 : 5명(법관1, 군의원 1, 공무원1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2)
- 교육자 : 없음(교육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재 미위촉)

(2) 조례안 제3조(기능 및 관할)제2항 본문 중 ‘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제6호에서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5조의2 관련 별표 1의2 규정에서 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연구직·지도직,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내용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 의견 |
|--|---|--|
| <p>제2조(구성) ①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u> 중에서 3인</p> <p>2. (생략)</p> <p>② (생략)</p> | <p>제2조(구성)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1. <u>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u> 중에서 3인</p> <p>2.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 <p>○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u>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u>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로 규정하고 있어 수정함이 타당함</p> |

수정 의견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3항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3조(기능 및 관할)</p> <p>① (생 략)</p> <p>②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p> | <p>제3조(기능 및 관할)</p> <p>① (원안과 같음)</p> <p>②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p> | <p>○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정함이 타당함</p> |
| <p>수정의견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p> | | |

〔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8호

2.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게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함임.

3. 주요골자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행사시 위문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 보훈단체 지원(안 제7조).

-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안 제8조).

-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4.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근간으로 하여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1) 조례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본문 중 “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설립허가)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 제2조(정의)에서는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서 상위 법령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현 하거나 또는 법률상의 표현인 “허가” 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위 법령의 표현과 다른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조례안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본문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한다’ 라고 규정한 내용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보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①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②선순위 수권유족

③애국지사(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규정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라고 1인에 한해서만 감면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 나. 수정내용 : 별첨
-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과 동일 |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국가보훈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배우자 2. 선순위 수권유족 3. 국가보훈 대상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상위 법령의 범위 내로 조정 |
| 수정의견 사유 :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라고 1인에 한해서만 감면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시행령 제86조의 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 |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9호

2.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월남전쟁참전 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주요골자

- 가. 제명을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간결하게 함.
- 나. 용어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춤 (안 제2조).
- 다.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 유공자”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6.25참전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자, 무공수훈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라.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함(안 제3조).

마. 제명 변경으로 인한 별지서식의 일부문구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의원발의(정종기 의원 외 11인)로 2006년 2월 14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던 것을

상위 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월남전쟁참전유공자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에서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월남전쟁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

- 지원기준 :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 수당지급 참전유공자 : 626명

- 추가 지급 대상자 : 148명(월남참전 115명, 무공수훈자 33명)

- 소요예산 : 105,500천원(당초예산 85,500천원, 추가소요예산 20,000천원)

○ 그러나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규정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중 현재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중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8호(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는 현행대로 지원을 제외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제7호(무공수훈자)만 삭제하여 무공수훈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제4호 : 전상군경(戰傷軍警), 제6호 : 공상군경(公傷軍警)
- 제7호 : 무공수훈자, 제8호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그리고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자구 수정 등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 (1)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제1호 본문 중 ‘국가보훈청장’ 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처장’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 (2) 조례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은 법명이 2007. 1. 3(법률 제8171호)일자로 ‘전자정부법’ 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 나. 수정내용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자로 한다.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p> <p>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률 제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p> | <p>제3조(지원대상자)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p> <p>1. -----국가보훈 처장-----</p> | <p>참 전 유 공 자 형평성 유지, 정부조직법의 개정 에 따라 동일하게 명칭 변경 (자구수정)</p> |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② 생략</p> <p>③ 다만, 서식의 첨부 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p> <p>③ ----- 「전자정부법」 -----</p> <p>④ 생략</p> | <p>변경된 법령 으로 표기 (자구수정)</p> |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0호

2. 개정이유

장묘문화의 변천으로 다양해진 장묘방법별 용어를 보다 현실적이고 순화된 우리말로 표기하고, 공설일반묘지 중 재정비 사업을 한 곳은 공설공원묘지로 분류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임.

3. 주요골자

- 가. 제명을 「거창군 공설묘지조례」로 간결하게 함
-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장묘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
 - 납골 ⇒ 봉안(안 제2조·제6조·제13조·제15조·제16조의1)
 - 묘지에 매장 ⇒ 장묘시설에 안치(안 제5조제2항제2호)
 - 납골당 ⇒ 봉안시설(안 제16조의1)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함

○ 각호 ⇒ 각 호(안 제2조·제6조)

○ 제16조의1 ⇒ 제16조의2(안 제16조의1)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안 제5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22조)

라. 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공원묘지로 변경된 곳의 명칭을 수정함
(안 별표 1).

○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 고제공설공원묘지

마. 납골묘 및 납골당의 명칭을 수정함(안 별표 2).

○ 납골묘 ⇒ 봉안묘, 납골당 ⇒ 봉안당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의 개정내용은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고제공설공원묘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묘지에서 공원묘지로 변경하는 사유와 묘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007. 5. 25 전부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08. 5. 26일부터 인데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행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과는 맞지 않으므로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규정을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수정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 (1) 조례 제9조(설치기간)제1항 본문 중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제2항의 규정에서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하며,
 - (2) 조례 제9조(설치기간)제2항 본문 중 ‘설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한 내용도 상위법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조례 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제1항제2호 본문 중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한 내용도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 라고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내용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 수정안 | 수정의견 |
|--|---|--|
| 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생략) 1. (생략) 2. <u>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u> | 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조례와 같음) 1. (조례와 같음) 2. ----- ----- <u>설치기간-</u> <u>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u> ----- 3. (조례와 같음) | ○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이므로 수정함이 타당함 |
| 3. (생략) ② (생략) | 3. (조례와 같음) ② (조례와 같음) | |
| 수정의견 사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 | |

| 조례안 | 수정안 | 수정의견 |
|---|---|---|
| <u>부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u>부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u> | ○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08년 5월 26일부터이므로 시행일을 맞추기 위함 |
| 수정의견 사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일이 2008년 5월 26일부터임 | | |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4호

2. 제정이유

우리 군의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 : 거창군 삶의 쉼터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나. 주요시설(안 제4조).

-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별 주요시설 규정

다. 주요사업내용(안 제5조)

-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교육, 노인복지증진 사업 등
-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취미·소양교육, 여성복지증진 사업 등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상담, 재활치료,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
라.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시 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계약시 기간 : 3년 이내, 재위탁 가능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가능
마. 기구 및 인원(안 제7조).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

○ 위·수탁의 경우 관장 및 사무국장 임명은 사전에 군수 승인
바. 시설의 사용료(안 제8조)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수탁 시설의 선량한 관리 등 의무 명시

아. 위탁의 정지 및 취소(안 제10조)

○ 수탁자 의무 위반, 협약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 수탁자 책임으로 정지 및 취소시 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비품은 거창군으로 귀속

자. 손해배상(안 제11조)

○ 시설 및 비품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차. 준용(안 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준용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2003년부터 2007년 말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인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그러나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 직접 운영 시와 위탁운영 시의 인력수급계획, 예산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 (1) 조례안 제6조(운영)제3항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제2항의 규정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2) 조례안 제7조(기구 및 인원)제1항의 규정에서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기구,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벗어난 행정규제이므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조례안 제8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제1항에서 “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므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료 등을 규칙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음.

- ①경상남도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
- ②창원시 알뜰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사용료)
- ③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5) 조례안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제1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의무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위탁계약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제3호에서 “위탁운영” 이라고 규정한 용어는 “수탁운영” 으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내용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4조(주요시설)</p> <p>①<u>삶의 쉼터는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한다.</u></p> <p>②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p> <p>1. ~ 4. (생략)</p> <p>③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p> <p>1. ~ 4. (생략)</p> <p>④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p> <p>1. ~ 5. (생략)</p> | <p>제4조(주요시설)</p> <p>① <삭제></p> <p>① (조례안 제2항과 같음)</p> <p>② (조례안 제3항과 같음)</p> <p>③ (조례안 제4항과 같음)</p> | <p>○ 제1항의 규정은 안 제3조 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해석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삭제함</p> |
| <p>수정의견 사유 : 중복된 부분 삭제</p> | |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6조(운영) ① (생 략) ② 삶의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월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다.</p> <p>④(생 략)</p> | <p>제6조(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 ----- ----- 별지 제1호서식 ----- ----- ----- -----</p> <p>③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에 ----- ----- ----- -----</p> <p>④ (조례안과 같음)</p> | <p>○ 제6조2항,3항의 별지서식은 제8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수정으로 별지서식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며</p> <p>○ 제3항은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설정함이 타당함</p> |
| <p>수정의견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함</p> | |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7조(기구 및 인원) ①<u>삶의 쉼터</u>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②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p>제7조(기구 및 인원) ①<u>삶의 쉼터</u>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 「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p> <p>②----- ----- ----- <u>구성하여야 한다.</u></p> | <p>○ 운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고</p> <p>○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수정함</p> |

수정의견 사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p>제8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u>①삶의 쉼터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u> <u>②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u></p> | <p>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u>①삶의 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②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u>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u> 2.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u> 3.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u>따른 독립유공자</u> 4. 「<u>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 제1항에 <u>따른 국가유공자</u> 5.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p>○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수수료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p> |
| <p>수정의견 사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p> | |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생략) 1. ~ 2. (생략) 3. <u>위탁운영을</u>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원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u>수탁운영을</u> ----- ----- 4. ~ 6. (조례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 ○ 제1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의무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위탁계약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제1항제3호는 수탁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정의견 사유 : 수탁자의 의무를 명백히 함 | | |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의견 |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 | ○ 별지는 제8조의 수정으로 별지서식이 추가됨에 따른 것임 |
| 수정의견 사유 : 별지 서식이 추가됨에 따른 것임 | | |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신청서

| | | | | |
|--------------|-----------------|--|--------------------|--|
| 신 청 자 | 법인명칭 | |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사무소소재지) | | 전화번호 | |
| 위·수탁 운영기간 | | | | |
| 위·수탁 관리목적 | | | | |

위와 같이 거창군 삶의 쉼터(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를 위탁받아 관
리·운영하고자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
다.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의 정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칭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별표]

거창군 삶의 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시간초과 사용료 | 비 고 |
|-----|--------------------------|--------------------------|--------------|-----|
| 대강당 | 1회/3시간 | 주간/40,000원 야간/50,000원 | 매시간당 10,000원 | |
| | 1일 사용 (09:00 ~ 18:00) | 60,000원 | | |
| 소강당 | 1회/3시간 | 주간/10,000원 야간/15,000원 | 매시간당 5,000원 | |
| | 1일 사용 (09:00 ~ 18:00) | 20,000원 | | |
| 기타 | 자체운영 규정에 의함 | | | |

※냉·난방, 음향, 조명시설 사용 포함임

[거창박물관설치 및 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2일(제2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1호

2. 개정이유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 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거창박물관조례”로 변경함.
- 나.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안 제1조).
- 다.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용어의 정의, 관람절차, 관람료 징수방법, 관람료 면제조항 등)

- 라.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5조).
- 마.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박물관담당 부서장과 박물관운영에 식견 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함
- 바. 박물관자료의 취득,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사. 관람자의 행위제한,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0, 제11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2006.11.30.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박물관 관람객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연간 관람료 수입액은 소액이므로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입장료 수입, 관람객 등 무료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 창 군 체 육 진 흥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2일(제2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2호

2. 제정이유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전문체육의 육성(안 제3조).
 -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 나. 생활체육의 육성(안 제4조).
 -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다. 직장체육의 육성(안 제5조).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라. 학교체육의 진흥(안 제6조).

-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 포상(안 제7조)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바. 경비의 지원(안 제8조)

- 범 국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 보급,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라는 표현은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체육회란 용어의 정의 범위 안에 경기단체란 용어가 포함된 것이므로 “체육회” 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단체” 라는 용어로 수정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에서 체육회란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할 때에는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체육회란 용어 정의는 조례안 본문 중 체육회란 용어 표현이 전혀 없으므로 삭제하고,

체육회의 용어 정의에서 표현한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라는 용어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제2항의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므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내용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 조례안 | 수정안 | 수정의견 |
|---|---|---|
| <p>제2조(용어의 정의)</p> <p>4. “체육회”라 함은 <u>군내 경기단체(이하“경기단체”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체육경기 개최와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내 체육단체(이하“체육단체”라 한다)를 말한다</u></p> <p>5. (생략)</p> <p>제3조(전문체육의 육성)</p> <p>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u>체육회 및 경기단체</u>를 육성한다.</p> <p>제5조(직장체육의 진흥)</p> <p>① 생략 ② 직장인 체육대회를 <u>연 1회 이상</u> 개최할 수 있다.</p> | <p>제2조 (용어의 정의)</p> <p>4. “<u>체육단체</u>”라 함은 <u>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u></p> <p>5. “<u>경기단체</u>”라 함은 <u>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u></p> <p>6. (생략) “<u>조례안 제5호와 같음</u>”</p> <p>제3조(전문체육의 육성)</p> <p>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u>경기단체</u>를 육성한다.</p> <p>제5조(직장체육의 진흥)</p> <p>① <u>조례안과 같음</u> ② 직장인 체육대회를 <u>연 1회 이상</u> 개최하여야 한다.</p> | <p>○ 체육회의 용어 정의에서 표현한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라는 용어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p> <p>○ 조례안 중 체육회란 용어의 정의 범위안에 경기단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으므로 체육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단체라는 용어로 수정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p> <p>○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3항에서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p>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2일(제2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5호

2. 제정이유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안 제2조)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 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 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안 제3조)
 -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 심의 후 통보

- 정부·지자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은 심의 생략
-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1000이상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5/1000 이상
- 라.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
 -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군수가 위촉, 문화관광과장과 도시
건축과장은 당연직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사. 위원회의 기능(안 제8조)
-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
- 아. 위원회 회의(안 제10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1) 조례안 제7조(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의 조문형식의 표기를 열거할 때에는 「항」을 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문 다음에는 「호」로 1, 2, 3 등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본문 다음에 「항」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조문형식의 표기
이므로 본문을 ①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②항등으로 조문형식의 표기를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2) 조례안 제7조 “제목” 과 본문 내용 중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의 용어 표기는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회” 라 한다고 약칭을 표현하였으므로 제7조의 제목과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회” 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의 공간·디자인의 가운데점은 잘못된 표기이므로 “공간디자인” 으로 가운데점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자 : 총무위원회
 - 나. 수정내용 : 별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 의견 |
|--|--|--|
| <p>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군수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p> <p>1. ~ 6. 생략</p> | <p>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p> <p>-----</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 <p>○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7. 9. 10일 개정됨으로 인한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맞추어 조문 변경</p> <p>○주민들에게 좋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율을 상향하여 1,000분의 2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p> |
| <p>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 <p>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 ----영 제12조제1항</p> <p>-----</p> <p>-----</p> <p>-----</p> <p>-----</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 <p>제4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기재생략</p> <p>1.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000분의 1 이상</p> <p>2. 영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1,000분의 5이상</p> | <p>제4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비율) 기재생략</p> <p>1. 영 제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1,000분의 2 이상</p> <p>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1,000분의 5 이상</p> |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정 의견 |
|---|---|---|
| <p>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영 제24조의3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u>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u>를 둔다</p> <p>① 기재생략 ②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과 <u>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u>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p> <p>③ ~ ⑤ (생략)</p> | <p>제7조(위원회구성) ①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u>위원회를 둔다</u></p> <p>② 기재생략 ③----- -----<u>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u>----- ----- ----- ----- ----- -----</p> <p>④ ~ ⑥ (생략)</p> | <p>○ 분문을 ①항으로 하고, ②항에서⑤항을 ③항에서⑥항으로 조문형식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p> <p>○ “공간·디자인”의 가운데점을 삭제 “공간디자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p> |
| <p>수정의견 사유 : 자치입법안 심사기준(법제처) 주민들에게 양질의 미술장식품 감상기회 제공</p> | | |